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5
----------	------

발의연월일 : 2016. 10. 20.
발의자 : 김경진 · 신용현 · 오세정
김중로 · 이용호 · 최경환
유성엽 · 이동섭 · 송기석
여기구 · 채이배 · 안철수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전파환경 기반 조성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44조의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미래</u> <u>창조과학부장관은 제44조의3에</u> <u>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u> <u>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u> <u>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u> <u>관, 공공기관, 대학, 기업체 등</u> <u>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